

소년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기간의 상한(上限)을 더 낮추어야 하는지 여부1)

1. 사건개요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이하 ‘헌장’) 제11조 제b호²⁾는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016년 7월에 선고된 R. v. Jordan, 2016 SCC 27 판결³⁾에서 헌장 제11조 제b호 사건에 적용할 새로운 틀을 수립하였는데 그 핵심은 추정적 상한(presumptive ceiling)이었다.

이 상한을 넘어가면,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지연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으로, 지방하급법원(provincial court)⁴⁾ 사건의 경우 18개월, 지방상급법원(superior court) 사건의 경우 30개월을 추정상의 상한으로 하였고, 피고인 측이 포기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여 지연된 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단 지연기간이 추정적 상한을 초과하면, 지연이 부적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반박할 부담은 검사가 진다. 그러나 지연기간이 추정적 상한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연이 적정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부담은 피고인이 진다.

2015년 4월 11일, 당시 15세였던 이 사건 피고인은 당시 16세였던 피해자와 하우스 파티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싸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를 커터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기소된 지 거의 19개월이 지난 2016년 11월 9일, 그는 형법상 가중폭행죄와 위험한 목적의 무기

1) R. v. K.J.M., 2019 SCC 55 (2019. 11. 15. 결정).

2)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제11조 제b호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적정한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R. v. Jordan 판결에 대한 소개는 헌법재판연구원, 캐나다 -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세계헌법재판 동향 2016 제6호, 43-54쪽(<https://ri.ccourt.go.kr/ckri/cr/study/selectPublishList.do>), 또는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16. 8. 25.에 발송한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0호(2016. 8.) 캐나다 편 참고.

4) 캐나다의 법원체계는 지방(주) 차원의 경우 지방하급법원(provincial court) - 지방상급법원(provincial/territorial superior court) - 지방항소법원(provincial court of appeal)으로 이루어지며 그 위로는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형사기소범죄의 경우 지방상급법원이 제1심 법원이 된다.

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유죄판결이 있기 얼마 전에 소송지연으로 인해 현장 제11조 제b호의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중지(stay of proceedings)⁵⁾를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이 사건의 소송지연기간이 Jordan 판결의 18개월 상한을 초과하여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소송중지가 인정되어야 하는 명백한 사건은 아니라며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Jordan 판결의 18개월 상한이 소년 사건에서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상고심의 두 가지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 1) Jordan 판결의 추정적 상한이 소년사건 소송에도 적용되는가?
- 2) 이 사건의 소송지연이 부적정(unreasonable)한가?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 법정의견은 1) Jordan 판결의 추정적 상한은 소년 사건에도 적용되고, 2) 이 사건의 소송지연이 부적정하여 소송중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판결요지

대법관 Moldaver의 법정의견(5인 의견)⁶⁾

(1) Jordan 판결의 추정적 상한이 소년사건에도 적용되는가?

1) 현장 제11조 b호의 틀(framework)

Jordan 판결 이전까지 현장 제11조 제b호의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5) 소송중지(stay of proceedings)는 재판 또는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일 수도 있고 무기한적일 수도 있다. 소송중지는 회사의 청산이나 파산, 형사 소송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효과는 조금씩 다르다. 형사사건에서 소송중지는 피의자에게 종종 무죄선고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6) Wagner 대법원장과 Moldaver, Gascon, Côté, Rowe 대법관의 의견.

권리 사건에 적용된 틀은 R v. Morin, [1992] 1 S.C.R. 771 판결에서 정리된 Morin 틀이었다.

<Morin 틀>

Morin 틀에 따르면 법원이 헌장 제11조 제b호의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네 가지 요소, 즉 ① 지연기간, ② 피고인 측의 포기, ③ 지연의 이유(내재적 지연(inherent delay)⁷⁾, 피고인 측에 의한 지연(defence delay), 검사 측에 의한 지연(Crown delay), 제도적 지연(institutional delay)⁸⁾, 기타 이유로 인한 지연 등) ④ 피고인의 자유, 안전, 공정한 재판의 이익에 끼치는 악영향(prejudice)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Morin 틀로는 고질적인 지연의 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새로운 Jordan 틀을 수립하였다. Jordan 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Jordan 틀>

전체 지연기간(기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추정적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지연은 부적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만일 검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연은 부적정한 것이 되고 소송중지가 인정된다. ※ 예외적인 상황의 유형 예시: 질병과 같은 개별적 사유(discrete events), 특별히 복잡한 사건(particularly complex cases)

전체 지연기간이 추정적 상한 미만인 경우, 그 지연이 적정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부담은 피고인 측이 진다. 이를 위해 피고인 측은 ① 피고인 측의 주도(defence initiative), 즉 소송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였고(and), ② 당해 사건이 합리적으로 그랬어야 할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입증

7) '내재적 지연'은 사건의 진행에 필수적으로 걸리는 시간으로 사건이 복잡할수록 준비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변호인들이 그들의 모든 시간을 오로지 그 한 사건에만 헌신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내재적 지연은 용납되며 그 결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8) '제도적 지연'은 당사자들은 재판에 대한 준비가 되었지만 시스템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지연이다.

해야만 한다. 추정적 상한을 넘지 않은 경우의 소송중지는 드물고, 오직 명백한 사건에만 한정된다. (이하, '상한 미만 심사기준')

2) 소년사건에서 강화되는 적시성에 대한 요구

Jordan 판결이 제시한 18개월과 30개월의 추정적 상한을 소년사건 소송절차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Jordan 판결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기존의 Jordan 틀은 소년사건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적시성(timeliness)에도 잘 부합된다. 소년사건에서의 강화된 적시성의 요구는 법학부분에서도 확립되어 있고 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도 규정되어 있다. Jordan 틀에 따르면 지연기간이 추정적 상한을 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측은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어린 나이는 이 심사의 두 번째 부분 - 합리적으로 그랬어야 할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 -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Jordan 틀이 소년사건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캐나다의 청소년과 사회의 이익에 적절히 공헌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소년사건에 대한 더 낮은 헌법적 상한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의 소년형사법체계는 성인형사법체계와는 구분되어 있다.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이 헌장 제11조 제b호 하에서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지만, 이러한 권리는 적어도 다섯 가지 이유에서 소년피고인들에게 더욱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 강화(Reinforcing the connection between actions and consequences).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다른 시간개념을 갖고 있으며, 성인들보다 미성숙한 기억력을 갖고 있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 장기간의 지연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흐리게 하고 처분의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데 반해서 적시의 조치는 이를 강화시킨다.

둘째, 심리적 영향의 감소(Reducing psychological impact). 소송지연은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충분한 답변과 방어에 대한 권리 보호(Preserving the right to make full answer and defence). 청소년의 경우 기억이 흐려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헌장 제7조⁹⁾가 보장하는 권리인 충분히 답변하고 방어할 능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잠재적 부당성 방지(Avoiding potential unfairness). 청소년기는 급속도로 두뇌와 인지, 사회심리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장기간의 지연기간이 범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분리시키는 경우, 청소년의 생각과 행동이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때로부터 상당히 많이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다섯째, 사회의 이익 강화(Advancing societal interests). 사회는 가능한 한 빠른 청소년의 갱생과 재사회화에 대한 이익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소년사건은 신속하고 적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3) Jordan 틀의 상한은 소년형사소송에도 적용됨

앞서 말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에 더 낮은 추정적 상한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소년형사법체계에서 지연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바는 없다. Jordan 판결 이후에 사전대처적으로(proactively)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이 협조를 받지 못한다거나 소년형사법체계 내의 집행기관들이 Jordan 판결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더구나 Jordan 판결은 서로 다른 집단과 개인들이 겪는 다양한 악영향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한 세트의 상한을 수립하였다. 청소년과 같은 특정 집단은 지연의 결과로 보다 큰 악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한을 정하는 것은 Jordan 판결의 획일성을 손상시킬 것이고, 특정한 범주 또는 하부 범주의 사람들이 겪는 고유한 정도의 악영향에 따라 다수의 상한선을 만들

9)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제7조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

모든 사람은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fundamental justice)을 따르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어낼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곧 비실용적인 기준이 되어버릴 것이고, 헌장 제11조 제b호의 틀을 단순화·능률화하려던 목적은 훼손될 것이다. 국회가 별도의 소년형사법체계를 만들고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년 사건에 대한 별도의 상한을 수립해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소년형사소송에서 Jordan 판결의 상한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Jordan 틀 하에서 피고인의 어린 나이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사건에서 강화되는 적시성의 필요성은 추정적 상한을 넘지 않는 지연기간이 부적정한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고려될 수 있고, 고려되어야 한다.

4) ‘상한 미만 심사기준’에 있어서 소년사건에서 강화되는 적시성의 요구에 대한 고려

Jordan 판결에서 확인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에서 더욱 강화되는 적시성에 대한 요구는 당해 사건이 합리적으로 그랬어야 할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이 걸렸거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하나의 사례별(case-specific) 요소일 뿐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비록 피고인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추정적 상한이 적용되더라도, 지연에 대한 용인의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추정적 상한은 확실성, 예측가능성, 단일성을 제공하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명백한 접근법을 제시하면서도, 상한 미만 심사의 분석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와 같은 사례별 특징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필수적인 융통성도 제공하고 있다.

반대의견의 우려와 달리, 청소년들이 Jordan 판결 이전보다 장기간의 지연으로부터 보다 강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상한 미만의 지연을 이유로 한 소송중지의 심사에서 그 지연이 부적정한 것임을 입증할 부담은 피고인 측이 지지만, 이것이 성인들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Jordan 판결 이전보다 청소년들을 덜 유리한 위치

에 두는 것은 아니다. Jordan 판결은 일단 지연기간이 추정적 상한을 초과하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부적정성의 강력한 추정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이 강력한 추정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건대, 지연기간이 상한 미만인 경우 소송중지를 정당화할 책임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져야 한다. Jorda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추정적 상한을 넘지 않은 경우의 소송중지는 드물 것이고 명백한 사건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언급은 Jordan 틀이 소년사건에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소송에 적용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추정적 상한을 넘지 않은 경우의 소송중지는 그러한 소송중지를 신청하는 전체 건수를 고려하면 드문 것이지만 청소년이 신청한 건수를 고려하면 덜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Jordan 틀을 유념하여 ‘상한 미만 심사기준’을 소년소송절차에 잘 적용하는 경우, Jordan 틀은 청소년들을 부적정한 지연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Jordan 틀은 형사법체계의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처음부터 사전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는 사전대처적으로 행동할 강한 동기가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그 실패는 해당 사건이 합리적으로 그랬어야 할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이 걸렸는지를 결정하는데 한 요소로서 참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피고인 측이 Jordan 틀의 ‘유의미한 조치’ 심사 - 소송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입증하는 것 - 를 통과하기 원한다면, 계속하여 사전대처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고, 사건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될 수 있도록 헌신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묵묵히 따르는 순종적인 목인으로는 안 된다.

5) 비사법적 처벌 프로그램 시도 및 실패로 인한 지연기간의 처리

비사법적 처벌(extrajudicial sanctions)¹⁰⁾ 프로그램을 적용하려고 시도하였

10) 비사법적 처벌(extrajudicial sanctions)이란 캐나다에서 소년피고인들이 전통적인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바로잡고 보상·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으나 실패함으로써 야기된 모든 지연은 사례별(case-by-case)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지연을 Jordan 계산에서 제거하는 것은 비사법적 처벌 조치가 실패할 경우 소송중지의 가능성을 증가시킬까봐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 비사법적 처벌에 대한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 소년형사법체계에서 그러한 조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건대 - 중요한 정책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접근법은 개념적인 단계에서도 타당하다. 비사법적 처벌방식을 시도하는 경우, 사건은 사법체계로부터 벗어나 다른 길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시계를 멈추고 사건이 다시 사법체계로 돌아오는 경우에만 다시 시계를 작동시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소송지연은 부적정한가?

1) 지연기간의 산정

이 사건의 지연기간은 18개월의 추정적 상한 미만이다. 전체 지연기간은 18개월 28일이지만, Jordan 틀에 따라 피고인 측이 야기한 지연기간은 전체 지연기간에서 차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원과 검사는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피고인 측이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 측이 직접적으로 지연을 야기한 것이 된다. 이 소송 중 한 번, 법원과 검사는 예정된 시간에 준비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제시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기일을 다시 잡아야 했고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은 5개월 후였다. 피고인 측이 야기한 지연기간을 정확히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2~3개월의 지연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고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 합리적으로 예기치 못하거나 불가피한 - 개별적인 예외적 사유(discrete extraordinary event)로 야기된 지연기간은 그러한 지연이 검사나 사법체계에 의해 합리적으로 경감될 수 없었던 범위에서 제하여야 한다. 행정적 오류로 거의 1개월의 지연이 발생하였던 것은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최종 지연

기간은 15~16개월로 상한 아래로 내려온다.

2) 상한미만 심사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근접하기는 하지만 ‘상한 미만 심사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이 사건과 같은 과도기적 사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건 - ① 피고인의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조치 ② 합리적으로 그랬어야 할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의 소요 - 은 맥락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 범의 상태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에 민감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소송과정을 통틀어 책임감 있게 행동하였지만 사전대처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측의 접근법은 오히려 순종적인 묵인에 가깝다. 그러나 재판의 80% 정도가 Jordan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비록 이 사건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었어야 했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합리적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재판의 대다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제도적 지연에 대한 용인수준이 전국적으로 높았을 때에 이루어졌다. 해당 관할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판의 한도 초과와 시스템상의 지연이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은 기록상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더구나 범죄의 심각성, 입증된 악영향의 부재는 검사가 이 사건의 지연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결되지 않을 거라고 믿을 타당한 근거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 또한 위에서 논의된 지속적인 시스템상의 지연은 검사가 적시에 이 사건을 진행시키기 어렵게 한다. 맥락적인 접근법으로 보건대, 이 사건은 합리적으로 그랬어야 할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중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Abella와 Brown의 반대의견(3인 의견)¹¹⁾

(1) 서론

헌장 제11조 제b호는, 성인들과는 구분되는 소년피고인들의 특성과 소년사법체계에서 지연으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되는 구별적인 악영향을 반영하여, 소년형사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소송에 대하여는 별개의 더 낮은 상한을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별도의 소년형사법체계를 제정한 국회의 의도, 캐나다의 국제법적 의무¹²⁾, 소년소송은 신속해야 한다던 Jordan 판결 이전의 판례법, Jordan 사건에서 성인들에게 설정한 추정적 상한의 배경이 된 고려사항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Jorda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성인소송에서 적절한 상한을 결정하였던 것처럼 소년소송에 요구되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지방하급법원 소년소송에서의 추정적 상한은 15개월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2) 별도의 소년형사법체계

백여 년 전 국회가 별도의 소년형사법체계를 만들었을 때, 국회는 두 가지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형사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그들에게 더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덜 형식적이고 더 신속한 소송절차를 만들하고자 하였다. 소년소송은 성인소송보다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강화된 절차상의 보

11) Abella, Brown, Martin 대법관의 의견.

12) 반대의견은 캐나다의 소년형사법 전문에 ‘UN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UN 회원국으로서 캐나다는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UN최저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도 준수해야 함을 밝혔다.

호는 소년형사법에도 성문화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보통법(common law) 상태를 더욱 확고히 한 것이었다. 소년형사법의 제정 이래로 법원은 소년범에 대한 형사소송은 성인보다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고, 성인 형사법 체계에서의 합리적인 지연이 소년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사법체계 내에서 청소년들이 갖는 보다 큰 취약성과 감경된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건대, 강화되고 강력한 절차상의 보호는 이 별개의 체계에 내재되어 왔다.

(3) 소년형사법 소송에서의 적시성의 요구

Jordan 판결에서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Jordan 틀이 소년사법체계에도 적용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형사법 체계를 분리시켜놓은 것을 지우는 일이 된다. 성인형사법체계를 위한 재판의 틀은 추론에 의해 별도의 소년형사법체계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특히 그것이 청소년들이 받아왔거나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보호보다 약한 보호의 결과를 낳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청소년들에게 Jordan 판결이 수립한 성인의 틀을 적용하는 것은 Jordan 판결을 바꾸고 그 명료성을 약화시킨다. Jordan 틀에 따르면 악영향은 더 이상 독립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 대신 상한을 정하는 요소이고, 매우 드물고 분명한 사건에서만 상한 미만의 지연으로 소송중지가 인정된다. 그런데 법정의견과 같이 청소년들이 겪는 악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소송중지가 이론적으로 보다 손쉽게 가능해지는 것으로 Jordan 틀을 바꿔버린다면, 상한 미만의 지연인 경우 소송중지는 오직 드물고 분명한 사건에만 인정된다는 Jordan 틀이 갖는 명료성이 약화될 것이고, 상한 미만의 지연은 적정하다는 추정의 예측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는 양쪽 세계에 모두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상한의 경직성은 청소년들이 이전에 받아왔고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보다 약한 보호를 제공하게 되고, 지연이 상한 미

만인 경우에 소송중지가 인정되는 경우 명료성과 예측가능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Jordan 틀의 ‘상한 미만 심사기준’은 청소년의 경우 구별되는 지연에 대한 용인수준을 정하지 못한다. 소년피고인에게 상한 미만의 지연이 부적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특별한 상황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비례적이지 못한 높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4) 소년형사법 소송에서의 추정적 상한은 더 낮아져야 함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역할은 연방대법원이 Jordan 판결의 상한을 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 Jordan 판결은 소년법원의 소송에 적용되는 상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연의 결과로 청소년들이 겪는 특유의 악영향은 Jordan 판결에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국회가 만든 별개의 법체계와 소년사건에서 인정되어온 더 큰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소년소송에는 더 낮은 추정적 상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Jordan 판결의 논증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다. 청소년에게 추정적 상한을 낮추는 것은 그들에게 더 강화된 현장상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보다 깊은 재판지연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인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연된 형사소송에서 야기되는 악영향에 관한 한 청소년과 성인의 평등보호는 차등적인 대우를 요구한다. 이것은 Jordan 판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Jordan 판결의 원칙을 소년형사법체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별도의 상한을 만들지 않는 것은 Jordan 판결의 근본적인 원칙들이 Jordan 판결 이전보다 청소년들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소송에 적용되는 추정적 상한은 Jordan 상한보다 낮아져야 한다. 원심인 앨버타 주 항소법원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Veldhuis 판사는 소년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추정적 상한으로 15개월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12개월 이하의 상한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15개월을 소년형사법하의 지방

하급법원 소송의 추정적 상한으로 정하고자 한다.

(5) 이 사건 지연기간의 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끝나기까지 걸린 전체 기간은 18개월 28일로 소년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15개월의 추정적인 상한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수많은 법정 출두 중 단 한번, 2시간 30분이 늦었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 측에 의한 지연으로 2~3개월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상의 실수는 사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경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어떠한 지연도 피고인 측에 의한 지연이나 개별적인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지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 사건의 지연은 과도기적인 예외로서 정당화되지도 않고, 검사가 이 사건의 지연이 적정하다고 입증한 바도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침해되었고, 소송중지는 승인되어야 한다.

대법관 Karakatsanis의 반대의견(1인 의견)

소년피고인의 구별되는 특징들에 부응하기 위해 소년형사법 맥락에서 별도의 추정적 상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법정의견에 동의한다. Jordan 틀의 추정적 상한은 소년형사법체계에도 적용되고, 추정적 상한을 넘지 않는 지연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는 보다 강경한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소년피고인들의 헌장 제11조 제b호 상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체 지연기간 중 어떤 부분도 피고인 측에 의한 지연이나 개별적인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지연으로 간주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이 겪은 지연은 18개월의 추정적 상한을 위반한 것이다. 검사가 기존 법의 상태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이 사건의 지연이 적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지연은 과도기적 예외로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중지는 승인되어야 한다.

(1) 소년형사법체계에서의 부적정한 지연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

소년형사법체계가 - 새로운 추정적 상한을 수립하는 예외적인 사법적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 고질적인 지연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상한을 낮추지 못한다고 소년피고인들이 성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Jordan 틀이 추정적 상한을 시행함으로써 확대된 이익을 그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다. 소년피고인들은 지방하급법원 재판의 경우 Jordan 틀의 18개월의 추정적 상한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소년사법체계를 포함한 전체 사법체계가 Jordan 판결에서 수립된 추정적 상한을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긍정적인 계획들로부터 결국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더구나 더 낮은 추정적 상한은 지연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는 특유의 악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증가되는 악영향과 소년형사법에 규정된 특별한 고려사항들은 Jordan 틀의 ‘상한미만 심사기준’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된다.

(2) 상한미만 심사기준의 조정

‘상한미만 심사기준’을 통해 Jordan 틀을 소년형사법체계에 맞추는 것은 소년피고인의 헌장 제11조 제b호상의 권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실현한다. 첫째, 소년피고인들에게 추정적 상한의 이익을 준다. 둘째, ‘상한미만 심사기준’은 소년피고인에게 지연이 미치는 특유의 영향과 소년형사법체계에서 더욱

크게 요구되는 적시성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을 포함할 만큼 충분한 유연성을 갖는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특유의 악영향을 포함하여, 더욱 큰 적시성의 필요성은 합리적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단순한 사례별 요소 - 개인적 특질, 특성 또는 특정 소년피고인의 상황과 같은 요소 - 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더 폭넓은 역할을 한다. 그 고려사항들은 소년형사법의 법규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체 심리에 퍼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따라서 ‘상한미만 심사기준’의 두 단계 모두 소년형사법체계에서 증가되는 적시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Jorda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상한 미만의 경우 소송중지는 매우 드물 것이고 분명한 사건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때, 이 판결은 전체로서의 형사법 체계를 언급한 것이었다. 소년형사법체계에서 적시성은 입법적으로 명령되고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건대, 필연적으로 소년피고인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의 지연은 성인피고인의 경우보다 더 금방 ‘합리적으로 그랬어야 할 수준보다 현저하게 긴 시간’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에 있어 지연기간이 상한 미만인 경우의 소송중지는 드물지도 않고 분명한 사건에 한정되지도 않을 것이다.

소년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동이 개방적이고 관대하게 검토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순종적인 묵인 수준보다는 더 요구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전대처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고 사건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될 수 있도록 헌신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피고인들을 과도한 지연 없이 재판해야 할 국가의 헌장 제11조 제b호상의 일반적인 의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Jordan 틀은 피고인 측이 사전대처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사건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한미만 심사기준’의 첫 번째 단계인 피고인 측의 주도(defence initiative), 즉 소송절차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

력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인보다 소년 사건의 경우 덜할 것이다.

(3) 비사법적 처벌 프로그램의 실패로 발생한 지연기간의 귀속

비사법적 처벌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을 피고인 측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Jordan 판결의 이전 또는 이후의 어떠한 법리에서도 주장된 바 없다. 이러한 지연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년피고인에게 Jordan 틀이 정한 18개월의 상한을 넘어 추정적 상한을 늘리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년형사법 사건의 경우 ‘상한미만 심사기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적시성에 대한 강조를 훼손시키게 될 것이다.

(4)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관 Abella와 Brown의 반대의견이 산정한 18개월 28일의 최종 지연기간에 동의한다. 또한 피고인의 지각이 2~3개월의 지연기간을 야기했다는 법정의견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한 부분에도 동의한다. 또한 검사가 기존 법상태의 존중을 근거로 한 입증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과도기 사건의 예외로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Abella와 Brown의 반대의견과는 다른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이 사건 피고인이 겪은 지연기간은 부적정하고 따라서 소송중지가 승인되어야 한다.